

투자권유준칙 (장외파생상품 – 기업고객용)

I. 총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 1)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당행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 준칙은 당행 내규상의 세칙에 속하고, 당행의 규정관리규정에 따라 자금시장본부장이 제개정할 수 있다.
- 3) 이 준칙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에 한해 적용되며, 해당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투자상품부의 ‘한국씨티은행 투자권유준칙’에 우선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 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은행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 금소법 제 2 조제 9 호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을 포함하여 [별지 제 4 호] 전문금융소비자 전환신청서 상의 고객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게 [별지 제 4 호] 전문금융소비자 전환신청서를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III.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희망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 1 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은행과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별지 제 1 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 [별지 제 2 호] 일반금융소비자 위험회피 목적 확인서를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별지 제 3 호] 부적정 장외파생 거래 확인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1. 및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3) 임직원은 2) 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IV.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IV-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등급 분석 등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 1 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 5 호] 장외파생상품 적합성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투자자의 등급을 [별지 제 8 호] 투자자등급 판단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등 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투자자 등급과 관련하여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내부 문서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 1 호]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별지 제 2 호] 일반금융소비자 위험회피 목적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와 거래목적을 파악하여야 한다.
- 6) 투자자의 위험관리능력, 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금융거래경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투자자등급을 [별지 제 5 호] 장외파생상품 적합성 기준 대비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문별로 기업금융그룹장, 대기업심사본부장, 자금시장본부장의 승인, 또는 커머셜사업본부장, 커머셜심사본부장, 자금시장본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 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은행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IV-2. 투자권유

10. 상품숙지의 의무

- 1) 장외파생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임직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해당 자격요건은 아래 사항 모두를 충족한 경우로 한다.

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보유한 자

나. 자격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주관 정기 보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한 자

11.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등은 은행이 정한 [별지 제 5 호]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등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 등급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등급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 호] 부적정 장외파생 거래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등급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등급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 등급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부적정 장외파생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은행과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이 경우 임직원은 [별지 제 1 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별지 제 2 호] 일반금융소비자 위험회피목적확인서를 통해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비율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제 5 호] 장외파생상품 적합성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① 법 제 103 조제 1 항제 1 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 10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아. 자기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가 법 제 174 조, 제 176 조 또는 제 178 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차. 금소법 제 17 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카. 관계법령 등 및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등급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14. 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 1) 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등급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여신심사승인권자와 비즈니스 승인권자 (Sponsoring Officer)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2) 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등급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자금시장본부 내부통제기준인 MCA 테스트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IV-3. 설명의무

15. 설명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2)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1) 부터 3)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자로부터 [별지 제 7 호] 상품설명 불원확인서를 징구).

6)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7)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은행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별지 제 6 호]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표와 같이 분류한다.

2) 은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VI.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7. 계약서류의 교부

- 1) 은행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2) 은행은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3) 은행은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은행은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18. 위법 계약의 해지

- 1) 은행은 금소법 제 17 조(적합성 원칙) 제 3 항, 제 18 조(적정성 원칙) 제 2 항, 제 19 조(설명의무) 제 1 항·제 3 항, 제 20 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 1 항 또는 제 21 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 9 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와 [별지 제 10 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참고)

3) 은행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투자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투자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 47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 47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은행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4) 은행은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9. 손실보전 등의 금지

- 1)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 103 조제 3 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20.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직원은 법 제 55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 71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은행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은행이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은행이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사.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아.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1) 은행은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 은행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 시행령 제 26 조 참조)를 10 년 또는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3)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 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정보 확인서

- ▶ 관련 법률에 따라 은행이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은행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은행은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유형	상장기업: _____	비상장기업: _____	
투자권유 희망여부	예: _____	아니오: _____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투자권유 희망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 희망여부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은행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_____ 외화자산 총계: _____
 부채 총계: _____ 외화부채 총계: _____
 연간 수출총액: _____ 연간 수입총액: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_____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에게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_____	_____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 부서: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관련 경력: _____	관련 자격: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_____ (전문가 수준):	중: _____	하: _____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 부서: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관련 경력: _____	관련 자격: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_____ (전문가 수준):	중: _____	하: _____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하려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_____		아니오: _____	
4. 투자자에게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에게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_____		아니오: _____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한국씨티은행과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_____	_____	조직명: _____ 인원수: (명)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_____	_____	규정명: _____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_____	_____	전산시스템명: _____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종류	경험유무	건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 (FX Forward)	_____	_____	_____	_____
FX 스왑 (FX Swap)/ 통화스왑 (Cross Currency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구조화 통화 옵션 (Exotic FX Option): KIKO 등	_____	_____	_____	_____
금리 스왑 (Interest Rate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상품 파생(Commodity)	_____	_____	_____	_____
기타 유형: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본인은 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행이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행에 통지하여야 귀행이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4. 본인이 귀행과 하려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본인의 거래 목적, 기타 모든 면에서 적합한 거래임과 귀행이 이 확인서 사본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직위) _____(담당자) _____(인/서명)

(법인명) _____

한국씨티은행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이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한국씨티은행 지점/ 부서명) _____(담당자) _____(인/서명)

투자자가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한국씨티은행이 기명 날인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원본은 한국씨티은행이 보관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전환신청서

본인은 한국씨티은행과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 받기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투자자 유형의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조언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청이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험회피(헤지)목적 이외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및 일반금융소비자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되기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금융소비자로서 취급됨으로써 증가하는 모든 위험 및 손실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다음에 V 표시된 법인으로써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 받기를 신청합니다.

고객유형	1. 주권상장법인: _____ 상장코드: _____	2. 전문투자자 확인증 보유자: _____ 등록번호: _____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2호~제15호* 해당: _____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첨부서류: 1, 3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전문투자자 확인증 사본

신청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정보]

고객명:

대표이사:

(법인감)

법인등록번호:

장외파생상품 적합성 기준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나 장내파생상품과는 별도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정함.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 년 미만	1 년 이상 ~ 3 년 미만	3 년 이상
주권 비상장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 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별지 제 6 호]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표 참조

* '경고'위험도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표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제정·운영함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표		
주의 (노란색)	경고 (주황색)	위험 (적색)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금리스왑, 옵션매수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주의, 경고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상품설명 불원 확인서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은행은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2. 따라서 투자자가 본 확인서를 통해 상품설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기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설명을 원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

▶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 은행이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한국씨티은행과 장외파생 거래를 하는 경우 외환거래 약정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ISDA 기본계약서 등

▶ 본인은 상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건별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품설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실시간으로 시장가격이 변동되는 장외파생상품의 특성 상 적시에 거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서면 요청을 하기 전까지 한국씨티은행과 상기 상품(동일 구조, 동일 기초자산*)을 거래할 경우 상품설명 및 해당 상품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선도, 스왑, 옵션은 서로 다른 구조이고 통화와 이자율은 서로 다른 기초자산이나, 미달러화와 일본엔화는 동일 기초 자산(통화)에 해당함

▶ 또한 본인은 상기 상품에 대해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최소 1회 이상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해당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조언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상기 상품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 및 상품설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은행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고객명:

대표이사:

(인감)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주 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참고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안내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은행과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 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고객명:

대표이사: (인감)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주 소:

■ 은행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은행의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은행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 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 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주)한국씨티은행